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670호 2022. 4. 1.(금)

훈 령

○울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고 시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1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2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51호 [도로명주소 고시]..... 13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5

【 안 내 문 】

- 남구 전자공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남구소식 → 남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남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2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심의회 원칙)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심의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주무관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		심의일시	
안 건			
심의결과			

울산광역시 남구 청원심의회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반대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서 기	간 사	위 원 장	결 재
안 건					일 시		
참 석 상 황	정 원	참 석	불 참	의 결 사 항			
발언자	발 언 요 지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하천명칭		두왕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평천길 79, 103-302
	성명	시원건설(주)
점용목적 및 개요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1공구) 현장사무실설치(3*6 3개소)
점용위치		남구 상개동 940-3번지 일원
점용면적		54m ²
점용기간		2022. 4. 1. ~ 2023. 3. 13.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하천명칭		태화강(국가하천)
점용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농민상회) 4층
	성명	(사)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이병호
점용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연등 설치)
점용위치		남구 신정동 1468번지 일원
점용면적		116m ²
점용기간		2022. 4. 2. ~ 5. 11.(40일간)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5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98번길 20외 3건

구분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해당주소 지번)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폐지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98번길 20외 3건

구분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일자	폐지 사유	비고(해당주소지번)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052-226-563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여고시 조서

구분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해당주소 지번)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98번길 20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79-6	2009. 12. 11.	용연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99번길 44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6-15	2009. 12. 11.	삼산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3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55번길 7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94-22	2009. 12. 11.	수암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4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40번길 1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25-13	2009. 12. 11.	봉월로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으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부여

 폐지고시 조서

구분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해당주소 지번)
1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98번길 20	2022. 3. 28.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79-6
2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80번길 5	2022. 3. 28.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6-15
3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55번길 7	2022. 3. 29.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94-22
4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40번길 11	2022. 3. 25.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직권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25-13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하천명칭		무거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3(달동)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남구 소상공인진흥과)
점용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 공작물 신축
점용위치		남구 무거동 1182-2번지 일원
점용면적		토지의 점용(282㎡) 공작물 신축(빛꽃조형물 20㎡, 디자인벤치 23㎡, 방향지시사인 1㎡, 블라드 7㎡)
점용기간		토지의 점용(일시점용) 2022. 4. 4. ~ 6. 19.(77일간) 공작물 신축(영구점용) 2022. 4. 4. ~ 영구